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승환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2. 12. 21.(수)

제 목

우리은행 은행원의 700억대 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 중간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이미 실명이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제12조 제1항 제1호)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A와 공범 B,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인된 A와 B의 93.2억원 추가 횡령 사실에 대해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조력자 등 8명을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등으로 입건**하여 어제(12. 20.) **1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 B에 대해 **추가기소**하는 등 자금세탁범죄를 발본색원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고자 계속 수사 중임
 - 즉, A와 B가 개인 및 가족의 채무를 갚고자 '12. 3.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5억 상당 금원 횡령을 시작으로 **9년간 총 707억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9종의 우리은행 명의 공문 등을 위조**하였으며, 횡령금원을 가족, 지인 등의 다수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차명으로 선물옵션거래** 등을 한 사실
 - 증권회사 직원 D는 A가 차명으로 선물옵션하는 사실을 알고도 차명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차명거래를 돕고 증권회사 직무와 관련하여 **1,800만원을 수수**한 사실
 - A, B의 가족 3명,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합계 89억 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여 사업자금, 부동산매입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
- 아울러, 자금추적 등을 통해 **횡령금원 무상 수수자 22명(74억 상당)**을 밝혀 필요한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취하였음

1

피고인

분류	순번	인적사항	관계
횡령 본범	①	A(43세, 우리은행 직원)	1심 선고(징역 13년), 항소심 중
	②	B(41세, A의 동생)	1심 선고(징역 10년), 항소심 중
조력자	③	C(49세, 개인투자업)	1심 선고(징역 1년), 항소심 중
	④	D(41세, 甲증권회사 직원, 구속)	A·B의 지인
	⑤	E(55세, 여)	A·B의 지인
	⑥	F(41세, 여)	A의 지인
	⑦	G(35세, 여)	B의 지인
가족	⑧	H(76세)	A·B의 부
	⑨	I(72세, 여)	A·B의 모
	⑩	J(41세, 여)	B의 처

2

주요 공소사실 요지 ※ 공소사실 전반은 별첨 참조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A의 단독범행)

- 우리은행 등 채권단의 주식회사 乙(워크아웃 대상) 지분 및 공장부지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 ① '16. 12. 위 공장부지 관련 대부금 환급금(7,500만여원)을 A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우리은행 명의 문건을 위조·발송
 - ② '18. 6. 주식회사 乙의 매수인(이란 엔텍합)으로부터 몰취되어 우리은행에 보관 중인 계약금 잔액(293억) 관리를 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한다는 취지의 채권단협의회 약정서를 위조·행사
- 엔텍합과의 국제중재(ISD)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권단이 A가 이미 횡령한 몰취 계약금을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결의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여 횡령 범행을 은폐하고자,
 - ① '20. 1. 금융위원회에서 요청한 몰취계약금 보관계좌의 영문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위조하여 금융위원회 담당자에게 행사하고,

- ② '22. 3. 위 페이퍼컴퍼니가 채권단 일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우리은행 상대로 물취계약금 지급 결의를 중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다음, A가 우리은행 측 소송담당자인 것처럼 우리은행 명의의 소송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

※ '15. 9. 엔텍합이 한국정부 상대로 국제중재(ISD)소송 제기, '18. 6. 한국정부가 엔텍합에 계약원리금 730억원 배상하라는 판결 선고, '19. 12. 한국정부 패소 확정

2.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A, B, D 범행)

- '12. 5.~'22. 4. 甲증권회사 직원 D는 차명 증권계좌 11개 등을 개설하여 A의 차명 거래를 돕고, A, B는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4천여 회에 걸쳐 주식매매거래, 옵션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고, D는 불법자금세탁 거래 미신고

3.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A, B, D, E 공모)

- '22. 4. 채권자의 압류로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E 명의 옵션 계좌를 양수하고, 계좌주인 E가 옵션거래를 위해 받아야 할 금융투자교육원 교육 및 (주)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D가 E인 것처럼 이수하여 위계업무방해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D, E, F, G, H, I, J 범행)

- '12. 3.~'22. 4.까지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 D는 1억1,800만 원, E는 11.9억여 원, F는 16.8억여 원, G는 29억 원, H는 13.3억여 원, I는 6.2억여 원, J는 37.7억여 원 수수

5.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B, G의 범행)

- '22. 4. 범행이 발각되자 B가 경찰에 자수하기 전 G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은닉 하게 하고, G는 B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폐기

3 주요 진행 경과

- '22. 5. 24. 당청, A·B·C 구속 기소
- '22. 5.~6. 금감원 통보 및 우리은행 고소, 관련자 조사
- '22. 8.~9. A·B 구치소 및 조력자 주거지 압수수색
- '22. 9. 22. A·B의 횡령 사건 1심 재판부에 변론재개 및 공소장변경신청

※ 검찰은 A, B의 우리은행에 대한 동종 횡령범행 93.4억원을 추가 하고 제3자 추징을 하기 위해 변론재개 및 공소장변경신청

- '22. 9. 30. A·B·C 1심 선고(징역 13년, 10년, 1년 등)
 - ※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재개 및 공소장변경신청 기각하고 즉일 선고, 검찰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
- '22. 10.~11. A·B 추가 범행 및 조력자 등 조사, D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 '22. 11. 30. D 구속
 - ※ F, G, H도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 기각, 한편 F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신문 기일에서 추징예정금액을 납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납부능력을 담보하는 의미로 재산목록 제출
- '22. 12. 12. A·B의 횡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신청 및 횡령금 무상수수한 제3자들 명의 재산(15억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청구
- '22. 12. 20. D 구속 기소 및 A 등 8명 불구속 기소

4 수사 의의

- A, B가 횡령한 금원 중 674억여 원은 채권단이 주식회사 乙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계약상대방인 이란 엔텍합으로부터 몰취하여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보관시킨 M&A계약금 등으로 공적자금의 성격이 있음
- 검찰 수사를 통해 A, B가 당초 알려진 '12. 10.보다 앞선 '12. 3.경부터 경제적 공동체인 가족들의 채무 변제를 위해 계획적으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 워크아웃 관련 자금 등을 횡령하였고, 차명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횡령범행을 9년간 지속한 사실을 확인함
- 아울러, A, B의 요청으로 甲증권사 직원 D는 다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횡령한 주식의 분산 입고, 옵션 투자 등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이 의심되는 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 인센티브 등 영업실적을 위해 묵인하였음
 - ※ D는 甲증권회사로부터 A, B의 옵션거래로 인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4.4억 수익 취득
- 한편, 가족 및 조력자들은 A, B가 주는 금원의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거액을 수수하면서 채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 결국, 경제적 이익을 위해 A, B의 불법자금거래를 적극적으로 돕고 대가까지 받은 금융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출처 불명의 거액의 돈을 A, B와 같이

은닉하고 사용한 가족과 조력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결합되어 A, B의 장기간 범행이 가능하였음

-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을 무상으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추징이 가능한 점을 착안, 자금추적 등을 통해 A, B로부터 횡령금원을 수수한 제3자 22명(74억 원 상당)을 추가로 확인하여 A, B의 횡령사건 재판에 참가할 것을 고지하는 등으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 실제, 피고인 F의 경우 추징예상금액인 16.8억 원에 대해 추징선고되는 경우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서와 함께 이를 담보하는 재산목록을 제출함
 - ※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은 부패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증여 등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
- 본건 수사는 횡령 본범뿐만 아니라 장기간 거액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한 조력자들까지 밝혀 모두 처벌하고, 나아가 범죄수익을 수수한 제3자의 부당이득까지 환수하는 등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사례임

5

향후 계획

- A, B의 횡령사건 항소심 재판 및 이 사건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아울러, A, B의 횡령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추가 조력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A, B의 장기간의 거액 횡령범행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적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의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임 ☑

[별첨]

피고인별 처분내역

분류	인적사항	범죄사실 요지	'22. 12. 20. 처분 내용
횡령 본범	①A(43세, 우리은행 직원)	'16. 12.~'22. 4. 횡령금 인출 및 은폐를 위해 우리은행 공문, 영문잔액증명서 등 문서 9개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구속 기소 ['22. 5. 24. 특가법위반(횡령) 등 구속기소]
		(B와 공모) '14. 12.~'22. 4. 타인 명의 甲증권계좌를 이용해 옵션매매 【금융실명법위반】	
		(B와 공모) '22. 4. E로부터 甲증권계좌 접근매체 양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B, D, E와 공모) '22. 4. D가 E 명의로 甲증권계좌 개설 사전교육·모의투자 대행 【업무방해】	
	②B(41세, A의 동생)	(A와 공모) '14. 12.~'22. 4. A가 타인명의 甲증권계좌 이용해 옵션매매 【금융실명법위반】	불구속 기소 ['22. 5. 24. 특가법위반(횡령) 등 구속기소]
		(A와 공모) '22. 4. E로부터 甲증권계좌 접근매체 양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A, D, E와 공모) '22. 4. D가 E 명의로 甲증권계좌 개설, 사전교육·모의투자 대행 【업무방해】	
		'22. 4. 횡령 범행 발각후 G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보관·은닉시킴 【증거은닉교사】	
조력자	③D(41세, 甲증권회사 직원)	'14. 12.~'22. 4. A의 차명 증권계좌 개설·관리,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대행 등 차명거래 중개·알선·방조 【금융실명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방조】	구속기소
		'12. ~'22. 4. A의 자금세탁거래 미신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15. 11. ~'21. 7. 범죄수익 등 1억 1,800만 원 수수, 그 중 1,800만 원은 직무 관련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특경법위반(수재)】	
		(A, B, E와 공모) '22. 4. E 명의로 甲증권계좌 개설,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대행 【업무방해】	
		'15. 11.~ '22. 4. 타인 명의 증권계좌 등 이용하여 주식매수 【금융실명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분류	인적사항	범죄사실 요지	'22. 12. 20. 처분 내용
	④E(55세, 여)	'18. 8.~'22. 4.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 약 11.9억여 원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불구속 기소
		'22. 4. A, B에게 甲증권계좌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A, B, D와 공모) '22. 4. D가 E 명의로 甲증권계좌 개설 사전교육·모의투자 대행 【업무방해】	
	⑤F(41세, 여)	'18. 3.~'22. 4. A로부터 범죄수익등 16.8억여 원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불구속 기소
	⑥G(35세, 여)	'17. 3.~'22. 4. B로부터 범죄수익등 2.9억여 원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불구속 기소
		'22. 5. B의 휴대전화 은닉하던 중 폐기 【증거은닉·인멸】	
'20. 9. B의 친구로부터 우리은행 계좌 통장 및 휴대전화 양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족	⑤H(76세)	'12. 3.~'22. 4. 범죄수익 등 13.3억여 원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불구속 기소
		A, B 형제가 구속된 이후 보험 해지, 현금인출로 범죄수익 8,250만 원 은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⑥I(72세, 여)	'12. 3.~'22. 4. 범죄수익등 6.2억여 원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불구속 기소
	⑦J(41세, 여)	'12. 3.~'22. 4. 범죄수익등 37.7억여 원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불구속 기소
A, B 형제가 구속된 이후 보험해지, 현금인출하여 범죄수익 1.7억여 원 은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